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정 2016. 7. 12. 개정 2022. 11. 10.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관련 법규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품공시"라 함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2. "여신금융상품(이하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 상품
 - 나. 할부금융 상품
 - 다. 자동차리스 상품
 - 라. 신용대출 상품
 -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
 - 3. "회사"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4.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사 항 및 그 외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5. "공시자료"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회사가 협회

- 및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자료를 말한다.
- 6. "공시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7. "공시담당자"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자료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별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를 말한다.
- 8. "협회 주무부서"라 함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 직제규정에 의거 해당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9.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일반원칙) 회사는 금융상품의 내용이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할 것
 - 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 3. 내용의 정확성·중립성·적시성을 유지할 것
 - 4.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 5. 회사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6. 회사는 공시항목의 기준시점, 게시일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시 기한을 준수할 것

제2장 여신금융상품등의 공시

- 제5조(공시대상) ① 회사가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하며, 공 시정보는 <별표1>과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규 등에 따라 협회와 회사는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 제6조(공시주기 등) ① 회사는 <별표 1>에 규정된 공시 항목별 공시 주기에 따라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공시 기한 내에 자료를 공시한다.
 - ② 정기공시 사항은 매년 또는 매 반기 또는 매 분기 또는 매 월 에 공시한다.
 - ③ 수시공시 사항은 정기공시 사항을 제외한 공시사항을 말하며, 공시 사유발생 시 지체 없이 공시한다.
- 제7조(공시서식) 공시서식은 공시자료를 작성하는 양식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 령을 따른다.
- 제8조(공시시스템 운영) ① 협회는 공시업무의 효율성 및 금융소비 자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는 협회 주무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장 공시자료 제출 및 확인 등

- 제9조(공시담당자의 지정) ① 회사는 금융상품 공시업무를 위하여 공시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공시업무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공시정보의 작성·공시 및 공시자료의 제출) ① 회사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별표 2>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공시기한 내에 당해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 공시항목 및 공시내용의 특성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만 공시 할 수 있다.

- ③ 공시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회사가 직접 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직접 공시할 수 있다.
-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① 협회는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정보 가 관련 법규 및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시자료의 작성 책임) 이 기준에 의해 작성된 금융상품 등의 공시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자료를 작성한회사가 책임을 진다.
- 제13조(공시수정) 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공시정보 및 공시자료 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누락되는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지체없이 수정공시를 하여야 한다.
 - ②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공시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누락되는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협회에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하고, 협회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정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14조(실무작업반) 협회는 이 기준의 변경 및 기타 제반업무의 수 행을 위하여 회사소속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공시기준의 변경 등)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별표 1>의 여신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과 <별표 2>의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기준은 201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기준은 2022. 11. 1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신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

<별표 2>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

<별지> 여신금융상품 공시자료 수정 요청서

〈별표1〉 여신금융상품 공시항목 및 내용

제 정: 2016. 7. 12 1차 개정: 2017. 8. 18 2차 개정: 2017. 10. 20 3차 개정: 2018. 6. 27 4차 개정: 2019. 3. 7 5차 개정: 2019. 9. 26 6차 개정: 2020. 7. 20 7차 개정: 2021. 2. 19 8차 개정: 2021. 4. 30 9차 개정: 2021. 8. 20 10차 개정: 2021. 8. 20 10차 개정: 2022. 3. 31. 12차 개정: 2022. 8. 5. 13차 개정: 2022. 10. 13. 14차 개정: 2023. 8. 31. 15차 개정: 2023. 8. 31. 15차 개정: 2023. 9. 20. 16차 개정: 2025. 1. 13. 17차 개정: 2025. 2. 14.

		8 . 2020	
공시 항목	내 용	공시 주기	비고
	1. 상품별 수수료율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할부	수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체이자율 대출상품 신용점수별 평균수수료율 등 현황 	월(20일)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결제성 리볼빙	∃ (20 ∃)	업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신 용 카드	3. 가맹점 수수료율 - 신용카드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분기	O ,
상품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직전 연도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분기 연(2월) 연(2월)	
	4.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	반기	협회 홈페이지 공시
	5. 신용카드회원 분포현황 - 신용카드회원 등급별 분포현황(총회원/이용회원) - 적용금리대별 회원 분포현황(총회원/이용회원)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6. 수수료 등 수입비율	옏	신용카드 업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공시 항목	내 용	공시 주기	비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분기	
	7. 휴면 신용카드 수 및 비중 8. 체크카드 발급실적 및 이용 현황	분기 분기	
	9. 채무면제·유예상품 주요정보 - 채무면제·유예상품 정보 -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	수시 분기	
	10. 약관 - 신용카드 개인회원 및 가맹점 약관(다운로드) - 금융약관 · 개별 금융상품의 약관(상품설명서 포함) · 제·개정내용	수시	신용카드 업자 홈페이지 공시
	11. 신용카드업자의 책임과 회원 준수사항 등 - 신용카드업자의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수시	<u></u>
	1. 자동차금융(국산 승용자동차-신차) - 자동차(신차) 금융상품	수시	
할부 금융 상품	2. 자동차금융(국산 승용자동차-중고차) - 자동차(중고차) 금융상품 - 적용금리대별 분포현황 · 일반상품(다이렉트상품 제외) · 다이렉트상품	수시 월	
	3. 자동차금융(수입승용차-신차, 중고차) - 자동차(수입차) 금융상품 4. 기타 할부금융(주택, 가전제품, 기계류, 기타)	수시 분기	~1 ~1
자동차 리스 상품	1. 자동차 리스상품 리스료	분기	협회 홈페이지 공시
	1. 신용점수별 평균금리현황	월(20일)	
신용 대출 상품	2. 적용금리대별 분포현황3. 중금리 신용대출 현황- 중금리 대출상품 운영 현황- 중금리 대출상품 연간 운영 현황	월 분(20일) 연	
	1.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반기	
기타	2. 대출·할부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연(12월)	
	3.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월(20일)	

※ 공시기한

- 수시 : 사유발생 즉시

- 월 : 매월 종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종료 후 20일 이내

분기: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반기: 매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연 : 매년 12월 31일 이내 또는 2월 14일 이내*

* 중금리 대출상품 연간 운영현황의 경우, 별도 공시일정(3월) 설정

〈별표2〉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

제1장 신용카드상품

1. 상품별 수수료율

- 1) 일반원칙
 - 가. 자료는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기입하며 할부수수료율은 2개월 할부수수료율부터 공시할 경우"*"표시한다.
- 2) 작성양식

상품별 수수료율

회사명	단기카드대출	할부 수수료	장기카드대출	일부결	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연체	기준일자 ^{주2)}
주1)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4 金	(카드론) 이자율	일시불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이자율	기단일사 7
							0000-00-00

주1) BC카드: 회원은행을 제외한 자체카드 수수료율 적용

주2) 단기카드대출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장기카드대출 이자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연체이자율 등이 변경된 날

2. 대출상품 신용점수별 평균수수료율 등 현황

- 1) 일반원칙
 - 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수수료 율은 월 중 신규 취급(추가대출, 기간연장 미포함) 대상회원의 대출 금액에 따른 가중평균 수수료율을 말한다.
 - 나. 결제성리볼빙 평균수수료율은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월별 이월잔액(월말 기준)에 대한 가중평균 수수료율을 말한다.

- 다. 평균 수수료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까지 기재한다.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월 중 신규 취급한 Σ (건별 대출금액 \times 적용 수수료율) 전월 중 신규 취급한 Σ 대출금액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월 중 신규 취급한 Σ (건별 대출금액 \times 적용 수수료율) 전월 중 신규 취급한 Σ 대출금액

□ 결제성리볼빙

∑(월별 이월 잔액 × 적용 수수료율)∑ 월별 이월 잔액

- 라.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수수료율* 및 전체 차주의 가중 평균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전체 차주 중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 주의 평균수수료율은 별도 공시한다.
 - * 무점수 차주에 대한 수수료율은 신용점수 구간별 및 신용점수 700점이하 차주 평균수수료율 공시에는 제외하되, 전체 평균 수수료율(평균금리) 산정시에는 포함
- 마. 조달금리는 공시 전월(영업일 기준) 민간 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u>카드사별 만기 3년 카드채 평균</u> 금리*를 공시한다. 다만, 겸영여신업자는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 ★ ∑매 영업일의 채권평가 3사 평균 민평금리 ÷ 영업일수
- 바. 대출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에만 할인 수수료율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 수수료율과 본래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대출기간에 따른 가중 평균한 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율로 본다.
- 사. 마이너스 방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한도 부여 시점(갱신 또는 변경(재)약정 포함)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작성양식

신용카드 대출상품 신용점수별 평균수수료율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단위:%)

	000.2-3	801~	701~	601~	501~	401~	301~	200.24	평균	금리	신용
구분	900점 초과	900 점	800 점	700 점	501~ 600점	500점	501~ 400점	300점 이하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정보 회사
00										, , ,	
카드											

• 점수기준 : 취급시점 전월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사별 선택, 선택 신용평가사 명시)

ㅇ 평균수수료율 상세보기

(단위:%)

			901~		601	01~ 501~	401	301~	300점	평균	신용	
회사	구분		900점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정보 회사
	기준가격											
00	조정금리											
카드	운영가격											
	조달금리						•					

• 기준가격 :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가산한 금리

• 조정금리 : 우대금리, 특판 금리할인 등 기준가격에서 조정하는 금리

• 운영가격 : 회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최종금리

• 조달금리 : 민간 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카드채 3년물

평균금리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단위:%)

	900점	801~	701~	701~ 601~ 501~ 401~		301~ 300	300점	mzd 평균 ·		신용	
구분	초과	900 점	800 점	700 점	600점	500점	400점	이하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정보 회사
00										, , ,	
카드											

• 점수기준 : 취급시점 전월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사별 선택, 선택 신용평가사 명시)

ㅇ 평균수수료율 상세보기

(단위:%)

		000 Z-j	001	701	(01	E01	401	201	200 2 .	평균	금리	신용
회사	구분						401~ 500점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정보 회사
	기준가격											
00	조정금리											
카드	운영가격											
	조달금리		•	•	•	•		•	•			

• 기준가격 :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가산한 금리

• 조정금리 : 우대금리, 특판 금리할인 등 기준가격에서 조정하는 금리

• 운영가격 : 회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최종금리

• 조달금리 : 민간 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카드채 3년물

평균금리

□ 결제성 리볼빙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단위:%)

	LI	900점	801~	701~	601~	501~ 401~ 301		301~ 3	301~ 300점	평균	평균 금리		
	구분	초과	900 점	800 점	700 점	600점	500점	400점	이하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정보 회사	
ľ	00												
	카드												

• 점수기준 : 취급시점 전월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사별 선택, 선택 신용평가사 명시)

ㅇ 평균수수료율 상세보기

(단위:%)

		000 Z-J	001	701	601	E01	401	301~	200 z-j	평균	금리	신용
회사	구분		801~ 900점					501~ 400점		전체	700점 이하 회원	정보 회사
	기준가격											
00	조정금리											
카드	운영가격											
	조달금리											

• 기준가격 :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가산한 금리

• 조정금리 : 우대금리, 특판 금리할인 등 기준가격에서 조정하는 금리

• 운영가격 : 회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최종금리

• 조달금리 : 민간 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카드채 3년물 평균금리

3. 가맹점수수료율

- Ⅱ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 1) 일반원칙
 - 가. 가맹점수수료율은 공시시점 직전 월 말 기준 실제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거래정지 및 해지가맹점, 분기 기준 무실적 가맹점 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평균결제금액 및 구간별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사업자 비중을 공시한다.
 - 다. 평균결제금액은 각 사별 개인신용카드 기준 공시시점 직전 1개년 동안의 총 매입금액을 총 매입건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기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단위: %)

				oo카드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영세	중소	특수	일박	<u>반</u> 구간내 비중
1) 2만원 이하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3) 1.00초과~1.15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2) 2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3) 1.00초과~1.15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3)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3) 1.00초과~1.15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4) 1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3) 1.00초과~1.15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5)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3) 1.00초과~1.15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6) 100만원 초과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3) 1.00초과~1.15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 공시시점 직전 1개년 중 총매입금액/총매입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영세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 여전업 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음)
 -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
 -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 4. 그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형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 ②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가대 사업자 비중
 - 1) 일반원칙
 - 가.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의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 나. 신용카드매출액 및 구간별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사업자 비중을 공시한다.
 - 다. 신용카드매출액은 각 사별 개인신용카드 기준 공시시점 직전 1개년동안의 총 매입금액으로 산출한다.
 - 2) 작성양식

신용카드 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단위: %)

				oo카드	(단위: %
신용카드 매출액 (신용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내 비중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1) 2천만원 이하	3) 1.00초과~1.15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1) 0.40%이하				
2) 2천만원 초과	2) 0.40초과~1.00이하				
~5천만원 이하	3) 1.00초과~1.15이하				
~5선만원 이야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1) 0.40%이하				
2) 트립마이 크리	2) 0.40초과~1.00이하				
3) 5천만원 초과	3) 1.00초과~1.15이하				
~1억원 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1) 0.40%이하				
사 1이 이 크리	2) 0.40초과~1.00이하				
4) 1억원 초과	3) 1.00초과~1.15이하				
~3억원 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1) 0.40%이하				
	2) 0.40초과~1.00이하				
5) 3억원 초과	3) 1.00초과~1.15이하				
~5억원 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1) 0.40%이하				
43 43 - 3	2) 0.40초과~1.00이하				
6) 5억원 초과	3) 1.00초과~1.15이하				
~10억원 이하	4) 1.15초과~1.45이하				
	5) 1.45초과~2.30이하				
	1) 0.50%이하				
	2) 0.50초과~1.10이하				
7) 10억원 초과	3) 1.10초과~1.25이하				
7) 10 10 10 11	4) 1.25초과~1.50이하				
	5) 1.50초과~2.30이하				
지어하는 배출제 :	- <i>5)</i> 1.50도의 2.50학의	1 +1 = .0 (0)	1 - 1 - 0 - 1	17,	

- 신용카드 매출액 : 공시시점 직전 1개년 중 총매입금액(개인신용카드기준)
- 영세, 중소, 특수, 대형가맹점 작성양식은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과 같음

- ③ 직전 연도 신용카드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 1) 일반원칙
 - 가. 직전 연도 신용카드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종류별(신용/직불/ 선불카드)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나.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액: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입내역에서 조회되는 신용/직불/선불카드별 매출액 합계 중 다음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액
 - 여전업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히는 특수가맹점의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액
- 다. 가맹점수수료 수익: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매입내역에서 조회되는 신용/직불/선불카드별 수수료 합 계 중 다음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직불/선불카드 기맹점수수료 수익
 - 여전업감독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특수가맹점의 신용/직불/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
 - 신용카드가맹점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
- 라. 직전 연도 신용카드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공시는 카드종류별(신용/직불/선불카드)로 한다. 또한, 직전 연도 1년(1.1~12.31) 동안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모든 매출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하되,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한다.

2) 작성양식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단위: %)

신용카드업기	계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은 제외
- 신용카드업자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기준은 업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 기준과 동일
- 4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 1) 일반워칙
 - 가. 영세가맹점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연간 매출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의미한다.
 - 나. 중소가맹점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연간 매출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의미한다.
 - 다.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공시는 카드종류(신용/직불)별로 한다. 또한, 중소가맹점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한다.
- 2) 작성양식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 11: 70)
003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 작성일 현재 실제적용 수수료율 기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2 .,)
005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2071—	12/10

- ■작성일 현재 실제적용 수수료율 기준
- ※ 부가설명 필요시에는 별도로 표기한다.
 - 예시1) BC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적용: 기업, 국민(BC), 경남, 농협(구축협 제외), 대구, 부산, 신한(BC), 씨티, SC제일은행, 수협, 우리, 전북, 하나
 - 예시2) 포인트 제휴수수료는 카드사(은행)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사용 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정액만큼 부담하는 수수료(포인트)를 말한다.

4.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

1) 일반워칙

- 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의거 매출액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 나. 협회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작성양식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명단

순번	상호명

5. 신용카드회원 분포현황

- Ⅱ 신용카드회원 등급별 분포현황
 - 1) 일반원칙
 - 가. 신용점수 이외의 요소로 자체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 아래 작성양식을 참고하여 그 분포현황을 공시한다. 단, 회사 자체 등급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시 "카드사명" 과 "등급구분 없음"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에도 "등급구분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 나. 총회원은 직전 월 말 기준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한 회원이고 이용회원은 직전 월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말한다.
 - 2) 작성양식

신용카드 회원등급별 분포현황

_(회사명 :)						(단위: %)
등급 회원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총회원									
이용회원									

- 등급구분명칭은 당해 회사 기준(예 : 1등급, 최우수, VVIP 등)으로 작성
- ②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
- (1)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1) 일반원칙
 - 가. 총회원은 직전 월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가능 회원을 말한다.
 - 나. 이용회원은 직전 월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말한다.
 - 다. 금리는 총회원의 경우 가격등급 테이블 상 금리를 적용하고, 이용회원은 마케팅을 감안한 실제 적용금리 적용하며 중도상환은 반영하지 않는다.
 - 라. 실제 이용회원에 대한 적용금리는 가중평균금리로 산정한다. 예시) 당월에 2회 이상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고객의 경우 각각의 적용금리를 가중평균

- 마. 회원은 본인회원 기준(가족회원은 본인회원으로 간주)으로 작성한다.
 - 본인회원 1회, 가족회원 1회 사용했을 경우, 본인회원이 2회 사용한 것으로서, 각각의 적용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바. 단일 수수료체계 적용 회사의 경우 구간별로 공란을 둘 수 있다.

2) 작성양식

적용금리대별 회원 분포현황(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구분	10% 미만	10~ 12% 미만	12~ 14% 미만	14~ 16% 미만	16~ 18% 미만	18~ 20% 이하
00	총회원						
카드	이용회원						

- 총회원 : 직전 월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
- 이용회원 : 직전 월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

(2) 할부

1) 일반원칙

- 가. 총회원은 직전 월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가능 회원을 말한다.
- 나. 이용회원은 직전 월 중 할부 이용회원을 말한다.
- 다. 이용회원의 경우 전체 이용회원, 무이자할부 등 제외*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 * 무이자, 부분 무이자, 일부 가맹점 부담, 세이브포인트 할부 등은 모두 제외하며, 한 고객이 유이자(정상)와 무이자 등이 함께 포함된 경우도 제외

라. 적용금리

- 0 총회원의 경우
 - 이용상품(무이자할부 등)에 따라 금리가 다른 경우 가장 높은 금리 적용
 - 동일 회원이 이용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른 경우 3개월 기준금리 적용

0 이용회원

- 직전 월 할부 이용회원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로 산정예시) 직전 월에 2회 이상 할부이용 고객의 경우 각각의 적용금리를 가중평균
- 할부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에만 할인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할인금리와 본래금리를 감안하여 대출기간에 따른 가중평균 기준으로 작성
- 마. 중도상환은 반영하지 않는다.

2) 작성양식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할부)

구분		10% 미만	10~ 12%미만	12~ 14%미만	14~ 16%미만	16~ 18%미만	18~ 20%이하	
O O 카 드	이용 회원	총회원 전체_ <u>이용회원</u> 무이자할부 등						
		<u>무이자할무</u> <u>등</u> 제외회원						

• 총회원 : 직전 월 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회원

• 이용회원 : 직전 월 중 할부 이용회원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1) 일반원칙

가. 이용회원은 직전 월 중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규로 이용한 회원을 말한다.

나. 적용금리

0 이용회위

- 이용기간별(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월 미만,12개월 이상, 전체) 구분 공시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월 미만 이용회원 중 직전 월에 2회 이상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한 경우, 최초 1회만 해당
- 직전 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이용회원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로 산정

- 예시1)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월 미만의 경우 직전 월에 2회 이상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 중 동일한 이용기간의 금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적용금리를 가중평균
- 예시2) 12개월 이상의 경우 직전 월에 2회 이상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의 경우 각각의 적용금리를 가중평균
- 예시3) 전체의 경우 직전 월에 2회 이상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의 경우 각각의 적용금리를 가중평균
- 대출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에만 할인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할인금리와 본래금리를 감안하여 대출기간에 따른 가중평균 기준으로 작성. 다만, 중도상확은 반영하지 않음
- 마이너스 방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한도 부여 시점(갱신 또는 변경(재)약정 포함)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작성양식

적용금리대별 회원 분포현황(장기카드대출(카드론))

	구분		10% 미만	10~ 12% 미만	12~ 14% 미만	14~ 16% 미만	16~ 18% ¤만	18~ 20% 이하
		3개월 미만						
0	ो	3~6개월 미만						
○ 카	용 회	6~12개월 미만						
- 기 - 드	원	12개월 이상						
		전체						

- 이용회원 : 직전 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이용회원
 -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 일반원칙

- 가. 총회원은 직전 월 말 기준,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리볼빙) 회원이고, 이용회원은 직전 월 말 기준 일부결제금액이월 약정(리볼빙) 이월잔액이 있는 회원을 말한다.
- 나. 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과 대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다. 이용회원에 대한 적용금리는 직전 월 말 기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이월잔액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로 산정한다. 예시) 이월된 잔액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적용금리를 가중평균

2) 작성양식

적용금리대별 회원 분포현황(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구분		10%미만	10~ 12% 미만	12~ 14%미만	14~ 16%미만	16~ 18%미만	18~ 20%이하
	결제성	총회원						
00 카	설계/8 	이용회원						
ファ 三	미초서	총회원						
	대출성	이용회원						

- 총회원 : 직전 월 말 기준,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
- 이용회원 : 직전 월 말 기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이 있는 회원(연체자 포함)

6. 수수료 등 수입비율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1) 일반원칙
 - 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분기 중 융통한 자금에 대해 약정기간 중 발생한 이자, 수수료 등의 총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 나. 수수료 등 수입비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이율)
 볼기 중 발생한 ∑건별 이자, 수수료 등 × 365* × 100
 불기 중 발생한 ∑(건별 융통액 × 이용일수)
 * 윤년의 경우, 366으로 계산

0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이율)

분기 중 발생한 ∑건별 이자, 수수료 등 분기 중 발생한 ∑(건별 융통액 × 이용일수) × 365* × 100

- * 윤년의 경우, 366으로 계산
- 대출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에만 할인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할인금리와 본래금리를 감안하여 대출기간에 따른 가중평균 기준으로 작성. 다만, 중도상환은 반영하지 않음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 일반원칙

- 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금리는 분기 중 각 월말 이월잔액 기준 이자율(가중평균)의 3개월 평균(산술평균)
 - 예시) → 7월 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기준 이자율(가중평균) = 11%
 - ◎ 8월 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기준 이자율(가중평균) = 12%
 - ◎ 9월 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기준 이자율(가중평균) = 13%
 - → 3분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금리 = 12%((¬+□+□)÷3개월)

2) 작성양식

수수료 등 수입비율

(단위 : 연%)

회사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	스)				
00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0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성				
	할구설세요꼭의절약성(되출명) 	대출성				

7. 휴면 신용카드 수 및 비중

- 1) 일반원칙
 - 가. 휴면 신용카드의 수는 기준시점(분기 말)으로부터 이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대상이며, 회원가입(카드발급)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휴면 신용카드 산정 시 제외한다.
 - o 분기 말 현재 유효기간 내의 이용가능 및 이용불가 카드 수를 모두 포함한다(다만, 해지된 카드는 산정 시 제외).
 - o 신규 이용은 없더라도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거 이용액에 대한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휴면 신용카드 산정 시제외한다.
 - 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휴면 신용카드 해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공시 대상 휴면 신용카드 수에는 포함한다.
 - * 공시자료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동 내용은 주석에 명시
 - o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o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 다. 휴면 신용카드의 비중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휴면 신용카드의 수 해당 분기 말 총 신용카드의 수

2) 작성양식

휴면 신용카드 수 및 비중

(단위 : 천매, %)

7 H	1/4	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지
구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절차
OO카드									바로가기

휴면 신용카드 해지 관련 카드사 상담센터

카드사명	전화번호
OO카드	

8. 체크카드 발급 실적 및 이용 현황

- 1) 일반워칙
 - 가. 체크카드 발급 수는 해당 분기말 시점에 발급된 총 체크카드 수를 말한다.
 - 0 발급 당시 체크카드로 발급된 경우만을 포함하며, 이 경우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하이브리드 카드)를 포함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발급되었으나 체크카드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o 발급 수에는 유효기간 내의 이용가능 및 이용불가 카드를 모두 포함한다.
 - 이용가능 카드는 분기말 현재 즉시 이용이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 이용불가 카드는 분기말 현재 즉시 이용이 불가능한 카드를 말하며, 이 경우 이미 해지된 카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 다만, 잔고가 "0"원인 관계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용가능 카드에 포함하다.
 - 나.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해당 분기 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된 금액을 말한다.
 - o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하이브리드 카드) 및 신용카드로 발급되어 체크카드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체크 이용실적만을 이용금액에 포함하며, 신용결제 실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작성양식

체크카드 발급 실적 및 이용 현황

(단위 : 천매, 백만원)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003J L	발급 수					
00카드	이용금액					

9. 채무면제·유예상품 주요 정보

① 채무면제·유예상품 정보

1) 일반원칙

- 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 나. 채무면제·유예상품 정보에는 상품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수수료율, 약관 및 핵심설명서, 변경일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변동내용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o 보장금액은 보장사고 발생시 최대 보장금액(한도금액)을 말하며, 약관 및 핵심설명서는 다운로드 또는 URL 링크가 가능토록 한다.
 - o 변경일자는 변경 해당 상품이 신규 진입한 일자 또는 기존 상품의 게시 내용이 변경된 일자를 말한다.
- 다. 핵심설명서에는 가입 정보, 수수료 청구내역, 상품특징, 보장내용, 보상신청 연락처. 고객 권리 및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작성양식

채무면제·유예상품 정보

(단위 : 백만원, %)

	상품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최대보장)	수수료율 (월)	H.]고	
회사명					약관	핵심 설명서	변경일자

^{*} 보장사고 발생시 최대보장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카드채무액을 보장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예시)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

- ※ 고객께서는 ○○○○. ○○. ○○.일 현재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께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가입 정보

상품가입일자	가입상품명	수수료율
YYYY.MM.DD.		

- 2. 수수료 청구 : (매월) 카드채무액 × 수수료율
 - * 카드채무액이란? 고객님께서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일시불·할부·장·단기 카드대출·○○○ (○○○제외),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한 ○○카드사의 총 채무액 (수수료 예시) 카드채무액: 당월 결제금액(90만원), 결제 후 잔액(10만원)인 경우 → 월 수수료: (90만원+10만원)×0.000%= 0,000원
- 3. 상품특징 : 고객이 매월 상기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객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을 유예하는 상품
- 4. 보장내용

(단위: 만원)

구 분		주 요 내 용(예시)	보장한도
+11 🖂	사망	회원의 사망	
채무 전액	치명적 질병	암·뇌졸증·급성심근경색·만성신부전증 진단시	
면제	치명적 상해	상해사고로 인해 손목이나 발목을 잃은 경우, 시력이나 청력의 영구적 상실, 신체마비 등	
채무			
부분 면제			
채무			
유예			

- 5. 보상신청 : ○○○○-○○○(채무면제·유예상품 전문 상담센터)
- 6. 고객 권리 및 유의사항
-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약관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약관 등이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2회 이상 미납시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보장내용 및 보상신청 등은 주요 내용만을 표기하였습니다. 보장제외사유, 보상신청 기간 및 보상신청시 필요서류 등 기타 관련내용은 ○○카드 홈페이지의 해당 약관(해당 URL을 표시)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센터(○○○-○○○○) 및 인터넷(해당 URL을 표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운영 현황
 - 1) 일반원칙
 - 가.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은 가입회원수, 총 채무액, 수입수수료, CLIP보험료, 보상금 지급액을 말한다.
 - 0 가입회원수 : 분기 말 현재 가입회원수
 - o 총채무액: 매년 1월부터 해당 분기(연)말까지의 일시불, 할부, 장·단기 카드대출,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한 총 누적채무액 (월평균채무액 별도 기재)
 - o 수입수수료: 매년 1월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카드채무액×수수료율
 - o CLIP보험료 : 매년 1월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보상금 지급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에 지급한 금액
 - 0 보상금 지급액: 매년 1월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보상금 지급액
 - 2) 작성양식

채무면제·유예상품 운영현황

(단위: 천명, 억원)

회사명	가입	총 차]무액	수입	CLIP	보상금
의사당	회원수	총액	(월평균)	수수료	보험료	지급액

10. 약관

① 신용카드 개인회원 및 가맹점 약관(다운로드)

② 금융약관

1) 일반원칙

개별 금융상품의 약관(상품설명서 포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2) 작성양식

<u>금융약관</u>

상품명	약관	상품설명서	개정내용

11. 신용카드업자의 책임과 회원 준수사항 등

- ① 신용카드업자의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책임
 - 1) 일반원칙

신용카드업자의 책임과 회원 준수사항은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과 가맹점에 개별통보를 해야 한다.

2) 작성양식

(작성 예시)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분실 · 도난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카드부정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부정사용
 -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카드사가 책임진다.
 - ** 회원은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신용카드 위 · 변조 등 부정사용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예외사항>

- ○신용카드 분실·도난 , 위·변조 부정사용 시 회원 책임 사유
 -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다.
 - *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비밀번호 누설, 카드 양도 또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등(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참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업자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업자는 아래 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예외사항>

-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 는 보상에서 제외
 - *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 등(가맹점 준수사항 참조)
- ②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작성 예시)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 카드의 관리 책임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o 회원은 카드를 양도·양수 대여 할 수 없다.
 -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해야한다.
 - ※ 배우자, 가족 등 양도양수 금지
- ㅇ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 구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 하거나 절단 분리 폐기 처리해야 한다.
- ㅇ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o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 시 신고를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 카드의 관리 책임 위반 또는 이행 태만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가맹점 준수사항

- ◇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타인에게 대여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 ◇ 타인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거래 금지(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수납대행기맹점)
- ◇ 가맹점의 현금융통 등의 행위 금지
 -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 ◇ 카드채권 양도 양수 금지
 -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자기매출거래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다.

제2장 할부금융상품

1. 자동차 금융(국산-신차)

1) 일반원칙

- 가. 공시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국내승용자동차 금융상품으로 한다.
- 나. 자동차 금융은 할부금융 및 오토론을 포함한다.
- 다. 금리는 운영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표시하도록 한다.
- 라. 전분기 실제평균금리는 직전분기에 실제 취급한 상품금리를 말하며, 최저·최고금리의 구간이 2% 이상일 경우 작성한다.
 - ※ 전분기 동안 해당 상품의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 공시 제외
- 마. 금리 등의 최저값과 최고값이 같을 경우 동일값을 기재하기로 한다.
- 바.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은 최저~최고로 작성한다.
 - *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없는 경우, 0.00을 기입
- 사. 기준일자에는 해당 상품의 공시 기준일을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 아. 대출기간(개월)은 12, 24, 36, 48, 60개월로 한다.
- 2) 작성양식

국산 승용자동차-신차

(단위: %)

										<u> </u>
상품 코드	제조사	차종	선 수 율	대출 기간 (개월)	최저 금리	최고 금리	전분기 실제 평균 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율	연체 이자율	기준 일자

- 상품코드는 숫자로 입력하기로 한다. (1:일반상품, 2:다이렉트 상품)
- 작성시 취급하지 않는 차종 또는 추가되는 차종은 행단위로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기로 한다.
- 작성양식은 엑셀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입력이외 각종 셀서식의 변경은 금지한다.

2. 자동차 금융(국산-중고차)

① 중고차 금융상품정보

1) 일반원칙

- 가. 공시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국내승용자동차 금융상품으로 한다.
- 나. 자동차 금융은 할부금융 및 오토론을 포함한다.
- 다. 금리는 운영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표시하도록 한다.
- 라. 전분기 실제평균금리는 직전분기에 실제 취급한 상품금리를 말하며, 최저·최고금리의 구간이 2% 이상일 경우 작성한다.
 - ※ 전분기 동안 해당 상품의 취급 실적이 없는 경우, 공시 제외
- 마. 금리 등의 최저값과 최고값이 같을 경우 동일값을 기재하기로 한다.
- 바.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은 최저~최고로 작성한다.
 - *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없는 경우, 0.00을 기입
- 사. 기준일자에는 해당 상품의 공시 기준일을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 아. 대출기간(개월)은 12, 24, 36, 48, 60개월로 한다.
- 2) 작성양식

국산 승용자동차-중고차

(단위: 점, %)

상품 코드	신용 정보 회사	신용 점수	대출 기간 (개월)	최저 금리	최고 금리	전분기 실제평균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율	연체 이자율	기준 일자

- 상품코드는 숫자로 입력하기로 한다. (1: 일반상품, 2: 다이렉트 상품)
- 작성양식은 엑셀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입력이외 각종 셀서식의 변경은 금지한다.

② 중고차 적용금리대별 분포 현황

1) 일반 원칙

- 가. 공시대상은 국내승용자동차로 한다. (수입차, 상용차 제외)
- 나. 자동차금융은 할부금융 및 오토론을 포함한다.
- 다. 매월 직전 3개월 동안의 신규 취급실적(추가대출, 기간연장 미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라. 중도상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약정 신용공여 기간으로 적용한다.
- 마. 취급비중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표시한다.
- ※ 다이렉트 상품 : 판매채널(모집인 등)을 통하지 않은 직접판매 금융상품

2) 작성양식

일반상품(다이렉트 제외)

(단위:%)

회사명	8% 미만	8~12%미만	12~16%미만	16~20%이하	합계	평균 금리
					100.00	

다이렉트 상품

회사명	8% 미만	8~12%미만	12~16%미만	16~20%이하	합계	평균 금리
					100.00	

3. 자동차 금융(수입-신차, 중고차)

- 1) 일반원칙
- 가. 공시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수입 신차 및 중고차 금융상품으로 한다.
- 나. 자동차금융은 할부금융 및 오토론을 포함한다.
- 다. 금리는 운영기준으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표시하도록 한다.
- 라. 전분기 실제평균금리는 직전분기에 실제 취급한 상품금리를 말하며, 최저·최고금리의 구간이 2% 이상일 경우에만 작성하고, 가중평균금리로 산출하여 기입한다.
 - ※ 전분기 동안 해당 상품의 취급 실적이 없는 경우, 공시 제외
- 마. 금리의 최저값과 최고값이 같을 경우 동일값을 기재한다.
- 바.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은 최저~최고로 작성한다.
 - *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없는 경우, 0.00을 기입
- 사. 기준일자에는 해당 상품의 공시 기준일을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2) 작성양식

수입-신차, 중고차

회사명	상품명	최저 금리	최고 금리	전분기 실제 평균금리	중도상환 수수료율	연체 이자율	기준 일자
	신차						
	중고차						

4. 기타 금융

- 1) 일반원칙
- 가. 공시대상은 주택, 가전제품, 기계류, 기타 상품으로 한다.
- 나.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연이자율(최저~최고)로 작성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기재 한다.
 - *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없는 경우, 0.00을 기입
- 다. 비고란에는 상품의 특징(상환방식, 금리종류(변동, 고정, 혼합), 대출기간 (최고) 등)을 기재한다.
- 라. 주택할부금융 상품의 경우, 분기중 신규 취급 상품에 대해 취급액이 큰 대표상품만 공시한다.
- 마. 가전제품, 기계류, 기타 상품의 경우, 상품명에 할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분기 말 취급잔액(관리자산 기준)을 기준으로 상위 3개 상품을 공시한다.(다만, 취급상품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취급상품만 공시)
- 바. 기계류의 경우 일반산업기계, 동력이용기계, 공작기계를 기재하며 기타 상품의 경우 상품명에 운수운반기기(건설기계, 상용차, 오토바이 등) 또는 기타 상품을 기재한다.
 - * 건설기계는 건설업에 사용되는 기계(지게차·포클레인·불도저·레미콘 등이 해당)

기타 할부금융상품

회사명	상 ⁻	품명	이자율	연체 이자율	중도상환 수수료율	비고
	주	-택				
	가전					
	제품					
	기계류					
	기타					

제3장 자동차리스 상품

- 1) 일반원칙
- 가. 공시대상 상품은 국산수입 신규 등록 승용자동차로 한다.(상용차 제외, 운용리스만 해당)
- 나. 공시차종(모델)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국산)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수입)의 승용자동차 내수판매 현황을 근거로 하여 각 10종 이상 15종 이내로 선정하되, 차종은 업계 실무작업반에서 변경(연 1회, 4분기 중) 할 수 있다.
- 다. 공시대상 회사는 상기 차종을 취급하는 회사만 공시한다. 다만, 전 분기동안 해당상품의 취급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는다.
- 라. 리스이용기간은 36개월로 하되, 리스료는 최저에서 최고 리스료로 하며 아래의 기주으로 각각 작성하여 공시한다.
 - o 리스보증금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적용율을 차량가액에 각 30%를 적용하여 최저~최고리스료를 산정
 - o 리스보증금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적용율을 차량가액에 각 회사의 실질 운영율을 적용하여 최저~최고리스료를 산정
- 마. 리스료에 포함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각종부대비용을 포함하며, 고객(리스이용자)의 신용도 및 회사별 리스상품운영 조건 (리스보증금 및 무보증잔존가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동차 리스상품 리스료 비교

(단위 : 원)

회사명	구분 (1:국산, 2:수입)	제조사	차종 (모델)	리스보 [.] 무보증? 각30 %		존가치무보증산존가지적용실질 운영율 적용			
				최저	최고	최저	최고		

- 취급하지 않는 차종 또는 추가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행단위로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한다.
-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방법(중도해지 수수료율의 최고, 최저금리 포함) 자율 기입(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
- ·(예시) 운용 리스 : 미회수원금X중도해지수수료율(8.0%~20.0%)X(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제4장 신용대출상품

1. 신용점수별 평균금리현황

- 1) 일반원칙
- 가. 전월 동안의 신규 취급실적(추가대출, 기간연장 미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기재한다.
- 나. 중도상환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 다. 각 점수내 동일조건의 고객이 적용받은 실제금리의 가중평균을 공시하고 "평균금리"란에 매월 직전 1개월 동안의 전체 신규 취급실적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한다.
- 라. 평균금리 상세보기는 차주의 신용점수별 기준가격, 조정금리, 운영 가격의 평균 및 조달금리*를 공시하며, 전업신용카드사에 대해서 작성한다.
 - * ∑매 영업일의 채권평가 3사 평균 민평금리 ÷ 영업일수
- 2) 작성양식

신용점수별 평균금리현황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j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 금리	신용 정보 회사	중도 상환 수수료
	,)O											
5	가드											

- 신용점수 : 각 금융회사별 외부 신용점수 기준(NICE 또는 KCB)
- 평균금리 : 직전 1개월동안 동일조건의 고객이 적용받은 실제금리의 가중평균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법(중도상환수수료율의 최고, 최저금리 포함) 자율 기입(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
- · (예시)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0.7%~2.0%) × (대출 잔여일수 /대출기간)

□ 평균금리 상세보기

회사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평균 금리	신용 평가 회사	중도상환 수수료
	기준가격											
00	조정금리											
카드	운영가격											
	조달금리			•								

- 기준가격 :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등을 가산한 금리
- 조정금리 : 우대금리, 특판 금리할인 등 기준가격에서 조정하는 금리
- 운영가격 : 회원에게 실제 적용되는 최종금리
- 조달금리 : 민간 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의 카드채 3년물 평균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법(중도상환수수료율의 최고, 최저금리 포함) 자율 기입(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
- · (예시)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0.7%~2.0%) × (대출 잔여일수 /대출기간)

2. 적용금리대별 분포현황

- 1) 일반원칙
- 가. 전월 동안의 신규 취급실적(추가대출, 기간연장 미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기재한다.
- 나. 중도상환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 2) 작성양식

적용금리대별 분포현황

회사명	8% 미만	8~12% 미만	12~16% 미만	16~20% 이하	합계	평균 금리	취급액 (백만원)

3. 중금리 신용대출 현황

<중금리 신용대출이란>

금리상한 기준*을 충족하며 외부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50이하인 차주에게 실행한 비보증부 신용대출

*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 업권별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1)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1) 일반원칙

- 가. 직전 3개월 동안의 신규 취급실적(추가대출, 기간연장 미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기재한다.
 - * 금감원 보고자료 기준
- 나. 평균금리, 금리구간 산정 시에는 중도상환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단, 이와 별개로 "상세보기" 항목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작성한다.
- 다. 매월 직전 3개월 동안의 전체 신규 취급실적에 대한 가중평균금리를 "평균금리"에 공시하고 해당 신규 취급실적에 따라 최저, 최대금리를 "금리구간"에 공시한다.
- 라. 추가 정보는 "상세보기"에 별도로 공시한다.

중금리 대출상품 운영 현황

회사명	취급 실적	7 H				개인신	용평점				ען די
외사당	금 건 액 수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비고
[A		평균 금리 (%)	0.00								상세
회사]		금리 구간	0.00								보기
		(%)	0.00								

(2)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연간 운영현황

1) 일반원칙

- 가. 매년마다, 분기 기준 중금리 대출 기준을 만족하여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으로 분기 사후공시를 완료한 상품*의 연간 취급실적을 총합하여 공시하다.
 - * 사후공시가 필수가 아닌 월평균 취급액 기준 3억 이하 건 및 사잇돌 대출상품 포함
- 나. 상품 단위로 금액, 건수, 신용점수별 평균·최고·최저금리를 공시하되, 중금리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분기는 제외한다.
- 다. 추가 상품정보는 상품별 "상세보기"에 별도로 공시하며, 가입방법·요건, 상담연락처, 대출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대출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 작성양식

중금리 대출상품 연간 운영 현황

	상품	취급	·실적					개인신	용평점				_
회사명	명	금액	건수	구분	900점 초과	801~ 900점	701~ 800점	601~ 700점	501~ 600점	401~ 500점	301~ 400점	300점 이하	비고
F 4 = 3 × 3				평균 금리(%)	0.00								
[A회사]	o o 대출			금리 구간(%)	0.00 ~ 0.00								상세 보기

상품별 상세보기

항목	내용
가입방법	› 인터넷, 모바일, 영업점, 모집인, 전화(TM), 기타 중 선택 기입(중복선택 가능)
가입요건	• 100자 내 자율 기입 • 예시, CB사 차주 신용평점 000점 이상, 현 직장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연소 득 20백만원 이상 급여소득자)
상담연락처	• 상담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예시, 00-000-0000
대출 부대비용* *이자율, 수수료 제외 발생비용	› 100자 이내 자율 기입(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법 100자 이내 자율 기입(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입), • 예시, 중도상환금액 × 해약금 요율(0.7%) × (대출 잔여일수 /대출기간)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 산정 방법 100자 이내 자율 기입 • 예시, 연체 기간에 따라 6% ~ 8% 가산 (최고 15%)
대출한도	• 100자 이내 자율 기입 • 예시, 신용점수별 000만원~000만원까지
대출 최고한도	• 숫자만 기입(단위:원)
신용점수 산정기준 (CB사명)	• NICE, KCB, NICE와 KCB함께 사용(해당사 입력)

제5장 기타공시

1.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 1) 일반원칙
- 가. 직전 반기 동안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업무보고서 AC426「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작성기준을 준용
 - o 가계: 업무보고서 AC426.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구분의 "가계" 차주의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작성한다.
 -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오토론, 할부, 리스 등
 - o 기업: 업무보고서 AC426.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구분의 "기업" 차주의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작성한다.
 - *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신용대출, 기타대출, 할부, 리스 등
 - o 신청건수: 업무보고서 AC426.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의 중복 제외 신청 건수
 - 0 인하금리: 가중평균 개념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Σ (개별 금리인하폭 \times 금리인하 수용 개별 대출잔액) Σ 대출잔액(금리인하를 수용한 개별 대출잔액)

- o 비대면 신청률: 비대면 신청건수*/신청건수
 - *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건(모바일, 홈페이지, 유선, 팩스, 이메일 신청 등)
- o 그 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업무보고서 AC426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작성기준을 준용

나. 이자감면액은 금리인하 적용시점의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 등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하여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기재한다.

2) 작성양식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화명	구분		신청건수 (A)	수용건수 (B)	이자 감면액*	인하금리	수용률 (B/A)	비대면 신청률
		신용						
	가계	담보						
	기/개 대출 ¹⁾	주택담보						
		소계						
	기업 대출 ²⁾	신용						
		담보						
		소계						
	합계							

-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기재
- 1)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신용대출, 기타대출, 할부, 리스 등
- 2)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신용대출, 기타대출, 할부, 리스 등

2. 대출 할부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1) 일반원칙

- 가. 공시대상 회사는 매년 말 다음 연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으로 산정하여 공시한다.
- 나.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상품은 신용대출, 오토론, 할부상품을 말한다.
- 다. 기타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상품은 오토론, 할부, 기타대출상품을 말한다.
 - o 업무보고서 AC426.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작성요령에 따른 신용 대출 또는 담보대출 분류를 준용

- 라. 부동산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말한다.
- 마. 리스, 공동대출, PF대출상품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바. 가계대출상품의 가입채널은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한다.
 - 0 대면: 영업점, 모집인, 기타
 - 0 비대면: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텔레뱅킹), 기타
- 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 올림)까지만 표시하도록 한다.

대출·할부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회사명	대구분	소구분	금리유형	가입채널	중도상환수수료율
		기수리호	고정 <u>대면</u> 비대면		
		신용대출	변동 대면 비대면		
	가계	нслеп	고정	대면 비대면	
		부동산담보	변동	대면 비대면	
			고정	대면 비대면	
		기타담보	변동	대면 비대면	
	기업	신용대출		고정	
		<u> </u>		변동	
		부동산담보		고정	
		Todar		변동	
		기타담보		고정	
		기 년		변동	

3.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1) 일반원칙

- 가. 공시대상은 공시일 직전 1개월의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상품 단위로 대출종류, 상품구분, 가입대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가능한 경우의 수에 따라 복수의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개인사업자 대출 공시 입력항목 >

항목	내용					
	› 담보대출, 보증대출 및 신용대출로 구분					
대출종류	 · 담보대출 : 주택 등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및 채권 등을 담보물로 취급하는 대출 · 보증대출 : 보증보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보증,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등을 담보물로 취급하는 대출 · 신용대출 : 부분, 인적 및 순수신용에 따른 대출(개인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화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별 이자율 별도 작성) 					
상품구분	› 일반대출상품 및 정책금융상품으로 구분					
가입대상	• 전체,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및 기타(차주 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로 구분					
상환방식	·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일시상환, 임의상환으로 구분					
대출한도	· LTV(예: 70%) 등을 고려한 대출한도가 있는 경우 기재					
 가 고정이자율 및 변동이자율로 구분 이자 계산방식 · 단, 일정기간(예: 3년 이상) 고정이자율 적용 후 변동이자율로 조건이 변혼합이자율 금융상품의 경우 고정이자율로 구분 						
이자율구간	· 해당 금융상품 이용 시 적용 가능한 최저이자율 및 최고이자율 입력					
전월 취급 평균이자율	› 공시일의 직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이자율 입력					
우대조건	›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우대조건 및 수준, 이자율 우대 한도 등 설명 기재					
대출 부대비용)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인지세, 질권설정통지비용, 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 및 산출방식 기재					
중도상환수수료	› 해당 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산정방식 기재					
0 - 0 - 0 - 0 T - T - E	· (예시) 중도상환금액×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가입방법	• 인터넷, 전화, 창구 가입 등					
공시일자						

다. 무실적 상품의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하고, 전월 취급 평균이자율을 "해당 없음"으로 기재

2) 작성양식

회사명	권역구분		금융상품코드	금융상품구분		금융상품명		가입대상	
가입대상(세부요건	가입대상(세부요건) 가입방법		자금용도	도 대출한도		대출한도(세부요건)		이자율방식	
전월 금리		전월취급평균이자율	우대금리		대출기간		대출종류		
최저	초	티고	CETTOUVIE	<u> </u>		내출기선		Чеоπ	
CB회사명	상환	한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부대비	대출부대비용 연체		이자율	이용지역	상품설명페이지
대출금리									
900점 초과 8	01점~900점	701점~800건	점 601점~700점	501점-600점	401	점~500점	301점~400점	300점 이하	평균금리

〈별 지〉

여신금융상품 공시자료 수정 요청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귀하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제5조에 의하여 당사 금융상품 공시자료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공시 수정 항목	
수정요청일자	
수정 전	
수정 후	
수정사유 (원인을 정	-세히 기재)

년 월 일

00사 대표이사 (인)